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9호 2018. 6. 29(금)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420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421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남원시 조례 제1422호 남원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6
- 남원시 조례 제1423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남원시 조례 제1424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남원시 조례 제1425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남원시 조례 제1426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남원시 조례 제1427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23호 남원시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 남원시 규칙 제624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50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7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55
- 남원시 고시 제2018-8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 56
- 남원시 고시 제2018-82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 58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1087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 남원시 공고 제2018-10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74
- 남원시 공고 제2018-1096호 도로공고(변경) ----- 79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0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본인”을 “본인”으로, “2년까지”를 “2년까지 월별로 분할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u>중소기업</u>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모두 1년이 경과한 때부터 <u>매월</u>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u>2년까지</u> 지원한다.</p> <p>④·⑤ (생략)</p>	<p>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 <u>기업</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본인</u>-----</p> <p>-----</p> <p><u>2년까지 월별로 분할하여</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1 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또는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출신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업대상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
2. 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4조(지원 범위) 장려금은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시기)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는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추천한 기업에게는 장려금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요원 위촉)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1422 호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4. “제 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3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

제5조 제1항 중 “트리하우스”를 “트리하우스, 캠핑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시설 사용료 등)”을 “(시설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트리하우스”를 “트리하우스, 캠핑장”으로,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용료의”를 각각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트리하우스를 사용하는”을 “트리하우스, 캠핑장을 이용하는”으로, “사용”을 “이

용”으로, “10:00”을 “12: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 기간은 사용”을 “이용 기간은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9조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대표관리소”를 “관리사무소”로 한다.

제11조 제목 “(사용의 예약 및 반환)”을 “(이용의 예약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다만, 이용 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4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전액”을 “전액 환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전액”을 “전액 환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사용허가를”을 “이용자가”로, “80퍼센트”를 “80퍼센트 환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취소한”을 “이용자가 취소하였을”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 환불”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반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를 “환불”로 한다.

제12조 제목 “(사용제한)”을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이용료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개정규정 중 트리하우스 시설 이용료는 2018년 8월 1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	운영 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공휴일	
트리 하우스	1일	8동	4명	70,000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 · 주말: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 공휴일 :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캠핑장	1일	6면		20,000	20,000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3조(업무 및 기능)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u>트리하우스</u>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 ----- ----- --- <u>트리하우스, 캠핑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입장료 등) ① <u>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u>체험·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u></p> <p>③ <u>체험·휴양시설의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u></p> <p>④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1. <u>국민 및 그 수행자</u></p> <p>2. <u>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u></p>	<p><u><삭제></u></p>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9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료-----.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요금표 게시) ----- 시설 이용료-----
----- 관리사무소 -----
-----.

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다만,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5.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반환,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략)

1. -----
----- 이용 -----
----- 전액 환불 -----
2. 이용일 -----
이용자가 -----
----- 전액 환불 -----
3. 이용일 -----
이용자가 -----
----- 80퍼센트 환불 -----
4. 이용일 -----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 50퍼센트 환불
5. 이용 ----- 이용 -----
----- 이용 -----
----- 미 환불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이용제한) ① -----

----- 이용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용 -----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4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
련장,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시설사용료””을 ““시설 이용료””으로, “사용하는”
을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날과 추석날

제7조 제1항 중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를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시설 사용료 등)”을 “(시설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사용료의”를 “이용료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 이용료”로 한다.

제13조 제목 “(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을 “(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사용”을 “시설이용”으로, “사용료를 지정계좌에”을 “이용료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중 하나의 방법으로”로, “입금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을 “환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전액”을 “전액 환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을 “이용자가 취소하였을”로, “전액”을 “전액 환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을 “이용자가 취소하였을”로, “80퍼센트”를 “80퍼센트 환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일”을 “이용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을 “이용자가 취소하였을”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 환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 : 미 환불

제14조 제목 “(사용제한)”을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를”을 “이용을”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 (제7조 관련)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연계할인	1,000	800	800	500	500	300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 연계할인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당일의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적용한다.

체험시설 이용료 (제7조 관련)

구분	시설이용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호랑이 라이더관	1,000	500	1,000	5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서클영상관	2,000	1,500	2,000	1,500	1,500	1,000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곤충온실	1,000	500	1,000	500	1,000	500	- 단체 : 20명 이상

통합입장료 (제7조 관련)

구분	통합입장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통합입장료	5,000	3,000	4,000	2,000	3,000	2,0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 통합입장료 : 전시관과 체험시설 3종을 이용할 경우 할인된 입장료임.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제7조 관련)

1. 전시관

편 철 부 분		NO. _____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절 취 선	(대표사진)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전시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연계 할인		1,000	800	800	500	500	300							연계 할인		1,000	800	800	500	500	3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 원 시 장													
2cm		6cm						12cm																	

※ 연계할인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전문대 당일의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용 권 (제7조 관련)

2. 호랑이 라이더관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입장권 NO. _____
	호랑이 라이더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이 용 권 (제7조 관련)

3. 서클 영상관

	20cm	
6cm 편 철 부 분	NO. _____	입장권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2,000/ " 1,500)	·청소년(" 2,000/ " 1,500)
	·어린이(" 1,500/ " 1,000)	·어린이(" 1,500/ " 1,000)
	년 월 일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이 용 권 (제7조 관련)

4. 곤충은실

20cm							
6cm 편 철 부 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NO. _____ 곤충은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절 취 선 </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cm</td> <td style="text-align: center;">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12cm</td> </tr> </table>	NO. _____ 곤충은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NO. _____ 곤충은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1,000/ " 500) ·어린이("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이 용 권 (제7조 관련)

5. 통합입장권

20cm							
6cm 편 철 부 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절 취 선 </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cm</td> <td style="text-align: center;">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12cm</td> </tr> </table>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4,000/ " 2,000) ·어린이(" 3,000/ " 2,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별표 2]

시 설 이 용 료 (제10조 관련)

구 분	이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다목적강당	100,000	150,000	200,000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1회 기준 4시간 이내

구 분	이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기획 전시실	50,000	100,000	150,000	·냉·난방 시설 : 1회 30,000원 ·1회 기준 4시간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u>생태교육장 전시관</u> ”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5. “ <u>시설사용료</u> ”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6.·7. (생략)	6. “ <u>시설 이용료</u> ”----- ----- 이용하는 ----- -----.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신설>	② ----- -----.
2. (생략)	1. (현행과 같음)
③ (생략)	2. <u>설날과 추석날</u>
제7조(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12. (생략)

<신설>

등) ① -----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 요금을 적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 전시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설 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용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요금을 적용할수 있다.

제10조(시설 이용료 등) ① -----

 ----- 이용료를 -----
 ----- 이용료의 -----
 ----- . -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시장은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와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사용 예약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

 ----- 시설 이용료 -----

 --.

제13조(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이용 -----
 ----- 이용료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중 하나
의 방법으로 ----- 납부
하여야 --.

② -----

 ----- 환불 -----.

1. -----
 ----- 이용 -----
 ----- 전액
환불

2. 이용일 -----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 전액 환불

3.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
를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를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5.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
일이 지날 때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반
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수 있
다.

③ (생 략)

제14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
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이용일 -----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 80퍼센트 환
불

4. 이용일 -----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 50퍼센트 환
불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
불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제한) ① -----

- 이용-----.

1.·2. (현행과 같음)

3. ----- 이용 -----

② ----- 이
용을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5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제6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공휴일	
숙박시설	커플실	4실	2명	80,000	100,000	
	가족실	1실	4명	100,000	120,000	
	단체실	1실	8명	200,000	220,000	
캠핑장	면	31면		30,000	30,00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6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3,000제곱미터 이상은 150미터, 4,000제곱미터 이상은 300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 시기 등에 관계없이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영 제55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개발행위가 준공된 부지에 인접하는 경우는 이격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임야에 한함)
-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 ----- ----- ----- -----</p>
<p>1. ~ 10. (생략)</p>	<p>1. ~ 10. (현행과 같음)</p>
<p><신설></p>	<p>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신설></p>	<p>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p>
<p><신설></p>	<p>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p>
<p><신설></p>	<p>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견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단, 제14호는 공동위원회의 심의</p>

<신 설>

를 거쳐야 함)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3,000제곱미터 이상은 150미터, 4,000제곱미터 이상은 300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 (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 농지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시기 등에 관계없이

개별시설을 합산한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영 제55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단,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개발행위가 준공된 부지에 인접하는 경우는 이격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임야에 한함)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427 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장려”를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금액(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산지원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지급하고, 다음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년 분할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출산가정”을 각각 “출생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를 “출생가정 :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가목 및 나목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축하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출산 축하용품”을 “축하용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출산 축하용품”을 각각 “축하용품”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출생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 장려를”을 “출생을”로, “출산”을 “출생”으로, “안내 홍보”를 “지원, 안내·홍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u>출산장려</u>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u>출산장려금</u>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출생</u> ----- ----- ----- <u>출생축하금</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출산장려금</u>”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출생축하금</u>”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금액(이하 “<u>축하금</u>”이라 한다)을 말한다.</p>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
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
년간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
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
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시 기준
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 3. (생 략)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출산
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
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
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
이 될 수 있다.

②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
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2. ---- 출생가정 -----

3. ----- 출생가정 : 1,000
만원-----

-----.

② 축하금-----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축하
금 -----

-----.

-----.

② -----
- 축하금 -----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읍·면·동별 출산장려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② (생략)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축하금 -----

-----.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

-----.

가. ----- 축하금 -----

나. 축하금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① -----

----- 축하용품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신청은 제6조제2항의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신청서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출산 축하용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
출산 축하용품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축하용품 -----

-----.

제12조(출생 사회분위기 조성) --
----- 출생 -----

----- 지원,
안내·홍보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규칙 제 623 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읍·면·동”을 “의회사무국, 읍·면·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6월 29일

남원시 규칙 제 624 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속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근로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사후관리) 시장은 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 애향장려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록기준지			
기업명			
취업년월일	근무부서		
졸업학교명 (중고등학교에 한함)	졸업년월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근로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통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통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추천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기업명	연락처		
근무부서	취업일 (근무기간 년)		
추천자격	직위	성명	
추천사유			

본 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기자를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제출서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인인 기업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 천원)

연번	지급년도	지급액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졸업학교	기업명	소재지	취업일

[작성요령]

-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예)190105-1
- 2.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예)남원시 도통동
- 3. 등록기준지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예)남원시 도통동

남원시청 고시 제2018 - 79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123번지 외 2필지
2. 사업목적 : 태양광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174.0m, 폭 B=4.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8. 06. ~ 2019. 06.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8. 06. 27.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김택식 (남원시 덕과면 덕과용산길 39)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8년 06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시 제2018-8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남원 예촌마당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6월 29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나. 사업의 명칭 :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남원시 월매길 12번지
- 나. 사업규모

구분	조성계획면적(m ²)	비고
계	3,380	
물레방아갤러리	1,118	
사랑이야기관	300	리마인드웨딩 체험실, 여성친화공간
노닐마당	650	바닥분수, 그늘막쉼터
이벤트존	300	사랑이야기관과 연계한 스몰웨딩, 프로포즈 존
캐릭터존	250	국악기캐릭터 설치, 트리아트 포토존
약속정원 및 조경	762	언약의 퍼걸러, 사랑의 자물쇠 담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계				17,498	3,380			-
1	쌍교동	255	도	13,684	68	국(건설부)		
2		260	대	1,053	1,053	남원시		
3		263	대	4	4	남원시		
4		264	도	73	73	국(건설부)		
5		265	대	203	203	남원시		
6		266	대	413	413	소**	2**	
7		267	대	162	162	우**	2**	
8		268	대	3	3	윤**	남원읍 천거리 *	
9		269	대	50	50	김**	남원시 월매안길 ***-***	
10		270	대	13	13	김**	남원시 월매안길 ***-***	
11		271	대	10	10	김**	남원시 월매안길 ***-***	
12		272	대	7	7	김**	남원시 월매안길 ***-***	
13		282	대	364	364	김**	남원시 월락동 부영3차아파트	
14		284	대	46	46	남원시		
15		288	대	251	251	남원시		
16		289	대	180	180	남원시		
17		290	대	195	195	남원시		
18		291	대	106	106	남원시		
19		292	대	17	17	남원시		
20		293	대	111	111	남원시		
21		293-1	도	8	8	남원시		
22		342	도	545	43	국(건설부)		

○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고시 제2018-82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남 원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산덕교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 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산교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 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촌교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황용교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촌교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향교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탈교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교량으로 「도로 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 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정교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교량으로 「도로 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 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룡교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교량으로 「도로 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 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 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시청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시의회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시보건소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285 (조산동)	보건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농업기술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이백면 이백로 309	농업기술센터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여성문화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285 (조산동)	교육체육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보절면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공설시장	전라북도 남원시	경제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 ~ 5천 제 곱미터 이상 ~ 5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 기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천 공급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설사업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문화체육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지점번호:다마 94771431]	교육체육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곡1교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경찰서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인월면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사무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산면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대산면 운교1길 26	대산면사무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p>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p> <p>*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p> <p>※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의총교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준섭체육관	전라북도 남원시 만인로 51, 남원중학교 (향교동)	교육체육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운동시설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8 - 1087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규정 신설 (안 제 8조제1항제5호,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환경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245), 팩스(063-620-670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063-620-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6.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규정 신설 (안 제 8조제1항제5호,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6. 25. ~ 2018. 7. 16.(21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과”를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를 “배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생 략)</p>	<p>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p> <p><u>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 반입 신청서

(읍면동 -)

신고인	성 명	
	주 소	
	차 량 번 호	
	연 락 처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폐기물 반입 확인서

(읍면동 -)

신고인	성 명	
	주 소	
	차 량 번 호	
	연 락 처	
	폐기물 종류	
	폐기물 발생장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 직접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8-10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6월 29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	예정일		
고죽교차로~갈치교차로 도로확포장공사	남원시 식정동 477-4번지 일원	도로	대로	3-103	고죽동 6-1도~ 식정동474-2도	L=352m B=25m	2018. 6.	2019. 11.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편입용지조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분할 전 면적	분할 후 지적	분할 후 지목	편입면적	잔여면적	등기 부동산		비 고
	도	시·군	읍·면	동	지 번		(㎡)			(㎡)	(㎡)	성 명	주 소	
1	전북	남원		고죽	6-1	도	1,118			968	150	국유지	건설부	
2	*	*		*	1-32	도	848			797	51	장*일	남원시 죽향동 ***번지	
3	*	*		*	1-27	도	73			73	0	장*일	남원시 죽향동 ***번지	
4	*	*		식정	산99	구	299			199	10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	*	*		*	산95-3	도	3,273			2,460	813	국유지	건설부	
6	*	*		*	441-26	대	1,320			83	1,237	정*규	남원시 충정로 310, 106동 ***호 (월락동, 산이고운 코아루 아파트)	
7	*	*		*	442-2	도	17			17	0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현대아파트 101-****	
8	*	*		*	443-2	도	225			225	0	정*술	장수군 범암면 사알리	사 정
9	*	*		*	448-2	수	204			12	19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	*		*	448-4	도	559			132	427	공유지	남원시	
11-1	*	*		*	477-2	도	631	477-2	도	0	599	박*형	갈치리	사 정
11-2	*	*		*		477-10		도	32	0	박*형	갈치리	사 정	
12	*	*		*	538-2	구	4,696			475	4,22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3	*	*		고죽	8	도	9,452			806	8,646	국유지	건설부	
14	전북	남원		고죽	6	단	202			151	51	이*덕	남원시 식정동 521-****	

15	*	*	*	1-29	도	129			129	0	김*홍	남원시 덕과면 양선길 52-**	
16	*	*	*	1	답	1,772			144	1,628	김*홍	남원시 덕과면 양선길 52-**	
17	*	*	식경	540	구	1,428			70	1,35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8	*	*	*	483-3	도	433			433	0	국유지	건설부	
19-1	*	*	*	483-1	답	2,750	483-1	답	0	2,554	이*기	남원군 남원읍 갈치리 ***번지	
19-2	*	*	*				483-4	답	196	0	이*기	남원군 남원읍 갈치리 ***번지	
20-1	*	*	*	481	답	3,521	481	답	0	3,476	공유지	남원시	
20-2	*	*	*				481-2	답	45	0	신*자	남원시 죽향동 1 죽향아파트 108동 ***호	
21	*	*	*	480-1	도	231			231	0	이*규	남원시 남원읍 식정리 **	
22-1	*	*	*	480	답	2,013	480	답	0	1,740	심*덕	남원시 상교동 ***번지	
22-2	*	*	*				480-2	답	273	0	심*덕	남원시 상교동 ***번지	

23	*	*	*	479-1	도	364			364	0	이*상외3명	서울 성북구 길음동 ****번지	
24-1	*	*	*	479-2	답	973	479-2	답	0	808	박*수외2명	광명시 광명동 295-41 대송빌라 ***호	
24-2	*	*	*				479-4	답	165	0	박*수외2명	광명시 광명동 295-41 대송빌라 ***호	
25-1	*	*	*	479	답	974	479	답	0	813	강*현	남원시 하갈치길 ***(갈치동)	
25-2							479-3	답	161	0	강*현	남원시 하갈치길 ***(갈치동)	
26	*	*	*	443-3	도	53			53	0	국유지	건설부	
27-1	*	*	*	444-2	도	132	444-2	도	0	70	서*봉	일실군 성수면 태평리	사 정
27-2	*	*	*				444-6	도	62	0			
28	*	*	*	477-4	도	1,058			999	59	국유지	건설부	
계						38,748			9,755	28,993			

물 건 조 서

#REF!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m)	면적 수량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남원	식정	441-23	간판	선경타이어	1식			
2	남원	식정	441-23	간판	물류센터	1식			
3	남원	식정	441-23	차단시설		1식			
4	남원	식정	478-3	판넬담장		35m			
				간판	현대개량소	1식			
5	남원	식정	산95-3	간판	태물류유통	1식			
6	남원	식정	538-2	표지판	쥬신림조경건설	1식			
7	남원	고죽	1-46	간판	현대철구조물	1식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096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5 -21	남원시 어현동 607-9(임)	황*근	2015-건축과- 신축신고-352	80	15.2	1,216	남원시 어현동 607-20	남원시 어현동 607-20, 607-8	도로지정 범위변경